

『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2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2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2월 25일

제1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

2013년 5월 13일

제17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상 우

나. 제안이유
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을 대행업체에 대행토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해 수집·운반 대행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생활폐기물의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따른 용어정의, 적용범위, 평가원칙에 관한 사항.(안 제2조 ~ 안 제4조)
- 평가지침, 평가계획, 평가실시 등 평가절차와 현장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.(안 제5조 ~ 안 제9조)
- 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구성, 회의운영, 자료요구, 수당 등에 관한 사항.(안 제10조 ~ 안 제16조)
- 평가결과 정책반영 및 조치에 관한사항.(안 제17조 ~ 안 제18조)
- 이행상황의 확인·점검에 관한 사항.(제1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 제2항, 제6항(법률 제10389호, 2010.7.23)
 - 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」 제15조의3
- 입법예고 : 2013. 1. 9 ~ 1. 29(20일간)(의견없음)
- 구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.(2013.2.12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희 철

□ 본 ‘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’은, 제17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건으로서,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 제6항 신설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을 대행할 경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, 매년1회 이상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.

○ 그 내용으로는,

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(제5조)하고, 연1회 이상 현장평가,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,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고 구미시 인터넷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 하도록 되어 있음.

○ 또한, 8명 이상 11명 이하의 평가자문위원회(위원장: 부시장)를 구성·운영하여 평가지침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향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세부적인 평가지침 및 관련규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마련하고,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위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안이 제정되어 있으므로, 대행업체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청소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